

세무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7년 4월 pp.33~58
한국세무학회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비교한 기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종철* · 손 혁**

<요 약>

본 연구는 실제사례를 통해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제공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소득을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 및 독립성 등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수취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높으므로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세당국이 추후 납세자가 신고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분하고 납세자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조세쟁송이 발생할 것이고 조세의 신뢰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조세쟁송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서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한 독립적이고 영리성이 있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는 주관적 판단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도록 양적금액이나 전체신고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기준의 구분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유인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므로 두 소득 간 필요경비 인정비율에 대한 차이를 완화하고, 인적용역의 창업비 상각이나 가사비용 등 새로운 형태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절차가 개선되어 조세쟁송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근거과세와 조세형평의 원칙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추계과세제도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조교수, jcyoon@kmu.ac.kr, 주저자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부 조교수, hshaw@kmu.ac.kr, 교신저자

I. 서 론

현행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얻은 소득의 일부이다. 이들 소득을 인적용역의 대가로부터 얻은 경우 소득원천이 동일하며, 소득금액의 계산 방식도 유사하다. 과세관청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열거주의에 의해 구분하고 있으나, 동일한 원천의 인적용역 소득인 경우 이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는 계속적, 반복적인지 여부이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分的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인이 얻은 인적용역 소득을 어떻게 구분,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그동안 많은 공방이 있었다. 다음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다.

2007년부터 3년간 기업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5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전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세무서에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지방국세청장 이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3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살아온 이 전 청장은 2004년 퇴직한 후 대형 로펌의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로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6여억원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동시에 기업 자문료 명목으로 5억4천여만원을 벌었다. 세무서는 기업자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지만 전 청장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중략(세정신문 일부수정 2014.10.23)

위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인적용역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차이가 유의하게 크기 때문이다. 해당 차이는 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의 인정범위 부분에서 발생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금액계산구조는 수취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총수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해당 필요경비는 기장에 의한 필요경비의 인정부분을 제외하곤 필요경비가 없거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의 인정부분만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인적용역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개인의 조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확정에 있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인정 방식으로 인해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유인을 갖게 된다. 특히 위 사례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인적용역으로 수취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훗날 조세당국은 신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추정할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를 추징한다. 납세의무자가 인적용역에 대한 추정세액을 추후 고지 받은 경우, 이미 해당 소득은 과거의 소득으로서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소득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추징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한다면 세법상 심판절차나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처럼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의 어려움은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쟁송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은 근거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조세행정력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 등을 수반하게 된다.

본 연구는 현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제도에 상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의 납세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근거과세와 조세형평의 원칙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현행 소득세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선택의 유인을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신고와 기타소득의 신고 실태를 국세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인적용역 소득구분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1.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과세제도 현황

가. 사업소득의 개념

사업소득의 항목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열거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한 구분은 한국표준산업구분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소득에 대한 업종의 구분은 적용상 유용성을 위해 필요에 따른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¹⁾ 또한 소득세법 동조 제20호는 소득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를 기술함으로써 열거된 소득이외의 소득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당국에서 정한 업종의 분류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기본적인 소득발생 원천 사업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1) 분류원칙은 허가사업의 경우 해당 업종 근거법령과 관행을 존중하여 분류한다. 반면에 종목이 다양하고 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 세분 또는 통폐합한다. 또한 독립되거나 산업가중치가 큰 경우 별도의 코드를 부여한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체계에 기반하여 세법상 적용유용성을 고려하고 있다(2015 경비율 책자 25P).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구분범위와 해당 사업에 대한 경비율은 추계과세기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 사업소득상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사업소득의 구분상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은 19개의 대분류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제18호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제18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수리업 : 산업용 기계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품의 경상적인 유지 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탁소, 이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 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종 분류에 해당한다.

위 소득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42조의 업종분류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해 살펴본다.

(2)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 등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자(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기타소득의 개념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소득의 구분상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며, 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또한 열거된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25호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항목은 제19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제19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내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그 성격이 나타나 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가지는 성격을 세분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영리성’에 대한 개념이다. 영리성이란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김완석과 정지선(2015) 등은 영리목적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영리는 경제적 성과를, 목적은 성과를 얻을 의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요건으로 사업장의 설치, 인허가의 취득, 사업

자등록 등이 그 의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영리목적의 측면에서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반면, 요건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장의 설치나 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요건 측면에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간 구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기준은 영리목적의 요건 측면에서 사업장의 존재여부, 사업자 등록여부로 판별할 수 있다.

둘째, ‘자기책임’, 즉 독립성의 개념이다. 서희열(2015)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 중 인적 독립성의 의미를 ‘자기계산’ 또는 ‘자기책임’으로 규정하고 고용된 자와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타인이나 타인의 사업 및 사업장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통한 반대급부로 임금이라는 소득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사업장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화폐적 손실의 위험은 없으며, 근로소득은 단지 근로의 제공의무에 대한 대가이다. 반면 자기책임은 경제적 이익의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적 손실과 이익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책임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 손실과 이익여부를 모두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타소득의 경우 독립성 측면에서 사업소득과 구분하기 힘들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각종 기타소득의 획득에 필요한 화폐적 부담 측면에서 사업소득과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은 사업소득과 동일한 산출구조를 가진다.

셋째,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개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즉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사업자의 활동은 계속, 반복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 등의 행위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비교하여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현저히 작다. 따라서 계속, 반복성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 발생의 빈도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표 1>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정리했다.

<표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비교

요 건	실질적 구분기준
영리성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존재여부
자기책임(독립성)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기타소득
계속적, 반복적 활동	반복성 및 계약내용 등 실질적 요건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구분에 대한 조세당국입장과 문제점

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성격과 구분의 중요성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은 주로 개인이 영리목적 하에 독립적으로 얻는 소득이다. 즉 <표 1>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기준에서 영리성과 독립성은 두 소득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각각의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기본 특성인 독립된 사업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 용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적용역 소득은 생산요소에 속하는 노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 용역으로 구분되어 동법에 따른 납세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용역은 과세사업자라면 당연히 수행해야할 각종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과세체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인적용역의 제공은 단순히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납부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과세구분에 대한 조세당국입장

한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질의회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서면1팀-1063, 2005. 09.07.)

사례 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1팀-242, 2006.02.23.)

해당 사례를 보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판정은 사업소득의 성격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신내용은 구분에 대한 예를 제시할 뿐이고, 실질에 대한 판단은 일선 세무서에서 각 재량에 맞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볼 유인이 있다. 반면,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의 인정범위를 줄이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원인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인적용역에 대해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대부분 추계방식으로 인정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도 큰 편이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은 추계방식이 있더라도 인정범위가 기타소득에 비해 현저히 작고, 추계방식이 아니더라도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타소득을 선택할 유인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추계과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3. 추계과세제도 개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산출되어야 함을 표명한 것이다. 반면 개별세법인 소득세법 제80조에서 증명서류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동 시행령 제143조에 추계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가. 추계과세제도의 취지

추계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산정할 자료나 증거를 갖추지 못하거나 해당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세당국의 입장에서 간접증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산출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과세표준 결정방법이다(서희열 2015). 즉 추계과세제도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납세산출비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출현했다. 또한 추계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을 높이고 해당 세액을 양성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추계과세제도가 비록 근거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여러 장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세법에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추계조사의 결정사유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하는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한편, 소득세법은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근거과세의 기초가 되는 증빙이나 서류가 미비나 허위인 경우, 제한적으로 추계방식을 통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추계과세방법

추계조사결정방법은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즉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사용하거나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계과세를 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방법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방법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국세청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반면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일괄 적용한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은 해당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를 공제한 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대 상		금 액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3억원 나. 1.5억원 다. 0.75억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단순경비율 구분방식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증빙을 갖추거나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규모가 부족한 경우,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득세의 근간인 신고납세제도의 취지를 확보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라.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

추계과세제도는 신고과세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준응비용을 절감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추계과세제도는 근거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장부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조세당국에서 정한 일정 비율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원칙에서 벗어났다(박태승 2006 ; 박태승 2015).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추계방법의 결정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통해서 발생하나, 그 내용은 세율결정과 다름없기 때문에 실질은 법규명령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김완석과 정지선 2015). 셋째, 조세형평의 측면의 측면으로, 업종별 혹은 직종에 따라 상이한 비율의 필요경비 인정은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간 조세형평을 해칠 수 있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납세자는 사업소득보다 기타소득을 통해 세금을 신고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4.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인적용역 관련 소득의 구분에 대해 포괄적 또는 구체적으로 지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개별 인적용역 소득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병곤과 서희열(2015)은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진구와 홍정화(2011)는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의 과세실태를 분석했다. 실제로 세무전문자격사 및 기장실무자 등 설문대상자는 현행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필요경비의 범위 및 세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했다.

오문성(2015)은 인세수입에 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계속성, 반복성과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저술로 인한 거액의 인세수입이라도 과세관청은 금액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조세불복과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인세에 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걸과 정재연(2014)은 추계결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적용역 관련 소득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주로 지적용역이므로 채고자산의 매입비용 및 임차료, 인건비 등의 경비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산정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명시적 필요경비가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적용역 소득별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세액은 소득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정우와 정래용(2015)은 일용근로직과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훈련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창출에 대한 창업비 상각액으로 간주하고, 가사 및 생계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유지선과 정지선(2016)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인적용역의 조세형평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외국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과의 소득구분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우리나라도 소득 간 인적용역의 필요경비 부담을 유사하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 평생소득의 개념으로 인적용역 소득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가사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Ⅲ.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실태와 관련 사례분석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실태와 비교

가. 기타소득의 과세실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2013년 자료)

(단위 : 백만원)

	인원	지급건수	연간지급총액	소득금액	소득세 (원천분)
소득구분	2,824,418	4,336,185	8,403,865	4,246,544	879,071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	570,336	657,763	1,040,304	1,026,282	203,466
필요경비(80%) 발생소득	814,206	1,425,008	2,172,900	439,090	80,554
그 외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	935,502	1,683,007	2,909,894	588,538	108,918
연금저축, 소기업상공인 공제부금해지 소득	110,974	112,910	687,450	687,423	137,483
비과세 기타소득	111,669	148,382	59,160	59,000	—
분리과세 기타소득	281,731	309,115	1,534,157	1,446,211	348,650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표 2>를 보면, 연간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은 8조 4천억원이며, 해당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²⁾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은 4조 2천억원으로, 연간지급총액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액기준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 반영되고 있다. 필요경비가 80%로 의제되는 발생소득은 연간지급총액의 약 25%이나, 의제필요경비로 인해 소득금액은 약 10% 수준에 해당된다.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비중이 필요경비 간주 발생

2) 단, 해당소득은 신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낸 것으로 비거주자 부분이 빠져 있어 정확한 기타소득의 합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유사하다.

한편, <표 3>은 연도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의 연간지급총액, 소득금액 및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자료이다. 연간 지급총액은 2010년 이후 매년 약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은 연간지급총액 증가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분은 기타소득금액의 약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타소득 계산시 원천징수세액과 일치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	인원	지급건수	연간지급총액	소득금액	소득세 (원천분)
2013	2,824,418	4,336,185	8,403,865	4,246,544	879,071
2012	2,684,271	3,894,079	7,719,947	3,860,365	797,452
2011	2,587,549	3,573,105	6,976,362	3,412,403	704,256
2010	2,110,698	3,178,367	6,326,704	3,186,347	657,244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나. 사업소득의 과세실태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인적용역제공을 포함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를 통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과 징수세액은 <표 4>에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13년 이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총 55조원 규모이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인 원	연간지급액	소득세원천징수분
2013	3,667,149	55,307,135	1,681,827
2012	3,491,817	53,461,534	1,630,390
2011	3,277,898	49,710,224	1,523,032
2010	3,085,626	45,336,675	1,395,772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표 5>는 인적용역을 포함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업종별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55조원에서 자영업과 병,의원 등을 제외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특정 직업군의 비중은 약 30%이상이다. 또한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지급규모에

불문하고 경비율의 적용을 받아 추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2013년 귀속 거주자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구분	인 원	연간지급액	소득세원천징수분	단순경비율
저술가	65,176	517,534	15,512	60.7
화가관련	13,735	199,678	5,989	72.3
작곡가	10,507	114,636	3,423	67.4
배우	14,695	546,430	16,380	46.7
모델	8,266	71,665	2,150	57.9
가수	5,073	235,759	7,063	54.6
성악가	8,260	49,845	1,495	66.8
연예보조	64,470	606,858	18,192	72.3
자문·고문	71,656	863,561	26,096	60.4
학원강사	351,467	4,366,243	130,962	61.7
직업운동가	23,810	661,178	19,836	65.8
보험설계	81,821	4,103,714	123,095	77.6
음료배달	3,546	33,229	997	80.0
방관·외판	269,972	3,163,108	94,767	75.0
기타 자영업	809,865	8,482,484	255,303	—
다단계판매	870,522	1,159,711	34,401	67.8
기타 모집수당	586,712	6,582,071	197,138	67.3
간병인	35,664	250,623	7,514	71.4
대리운전	44,237	95,057	2,679	73.7
행사도우미	105,471	363,230	10,895	65.8
물품배달	29,858	327,179	9,805	64.4
병의원	88,513	21,124,605	632,255	—
기타	103,853	1,388,738	65,881	—
합계	3,667,149	55,307,135	1,681,827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과의 비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받는 소득 중 원고료·인세·창작품의 대가, 제19호의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으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그 내용은 동일하며, 단지 구분 기준은 일시적 제공여부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인적용역 제공자가 받는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구분은 사실상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소득은 경비율을 적용받는 반면, 기타소득은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80%까지 최소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이 동일한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조세쟁송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과 사업소득과의 쟁송

<표 6>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판례 중 종합소득세 관련 쟁송건수와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간 쟁송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기타소득 쟁송은 대부분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다른 소득과의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한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따른 쟁송은 상당 부분이 인적용역의 구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관련 쟁송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납세자와 조세당국 간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두 소득간의 조세쟁송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표 6>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쟁송건수 및 인적용역 분류에 대한 쟁송건수

(기간 :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분 류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합계
전체건수	3,601건	6,758건	3,165건	13,524건
기타소득 관련 쟁송건수	133건	477건	219건	829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간 쟁송건수	17건	69건	28건	114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간 인적용역 쟁송건수	13건	31건	13건	59건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쟁사례

가. 사례 A³⁾

거주자인 A는 2008년 6월 말 직장에서 퇴직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단체에서 강의를 수행하고 강의료 및 원고료 명목으로 매년 대가를 지급받은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각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위 강의료 등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경정, 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6년부터 A의 직장퇴직일인 2008년 6월 말까지 수취한 강의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 그 이유는 퇴직 이후 받은 강의료 등이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A는 강의료 등이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 수취했다고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뀐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소득이 당사자 간 맺은 거래의 형식과 명칭 등 외관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의 활동기간, 횟수 등을 통해 충분히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퇴직 이후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퇴직 전 근로소득자로서 수취한 강의료 등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취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합당하나, 퇴직 후의 강의료 등의 소득은 주요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므로 본 사건의 사항은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의 오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도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나. 사례 B⁴⁾

거주자인 B는 근로소득자로, 근로기간 중 K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인세를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 그 이유는 B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이며, 작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으로 대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 제 19조 1항에 해당 사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B가 원고료로 지급받은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B와 K출판사 간 맺은 출판계약

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070 자료를 발췌, 요약한 것임

4) 국심2007서3282를 발췌, 요약한 것임

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거나 중판이 계속 출판되는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계속성이 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9%이고 인세가 91%에 해당하므로 B가 제공한 용역은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했다.

B는 이를 불복하여 해당사건을 심판청구 하였으나, 담당심판관은 중요한 쟁점으로 B의 소득이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B의 소득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가 인세로 계속 발생하였고, 책을 18권까지 발간하였으며, 다른 책도 저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 사례 C⁵⁾

거주자인 C는 2002년부터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세무사로서 기장업체의 세무신고서의 검토와 세무자문 등을 본업으로 수행했다. C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8곳에서 발생한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 및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과 비교하여 전체수입금액의 약 20%수준이고, 회의비, 특강료, 원고료는 세무사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는 해당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해당 지방국세청은 구분신고한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경정, 고지했다. C가 구분신고한 기타소득을 지방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이유는 해당 소득이 사업자등록 후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규모 및 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C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외부강연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자등록자가 업무 또는 업무 외 시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즉 직업 간 과세불공평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조세심판원에 항소했다.

조세심판원은 C가 신고한 소득이 당사자 간 약정한 거래형식과 명칭, 외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비록 C가 전속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강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했으며, 세무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수입 중 20.5% 수준이라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사회통념상 C의 직업활동의 내용과 활동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C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C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5) 조세심판원 2013서2549 사건을 발췌, 요약한 것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여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위에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쟁송은 다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인적용역 관련 조세쟁송의 대부분은 처분청에게 유리한 판결, 즉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심사 및 심판청구에 불복하여 상고했더라도 처분청에 유리한 판결이 대부분이다. 물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결은 법조항을 확인하고 증거 및 기존 판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판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대한 판단

제Ⅱ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수취했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된다. 사례 A는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수취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였다. 사례 B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장조건과 납세자가 서적을 2회 이상 완성하였으므로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례 C는 전속계약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 후 반복적으로 수취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았다. 하지만 납세자와 처분청 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는 조세쟁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동일한 일회성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수취를 1회만 수취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하였다면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방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활동을 다수 수행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와 처분청 간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대해 상이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

나. 독립성에 대한 판단-납세자의 주된 소득 여부

사례 A를 살펴보면 납세자의 주된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로소득자로 재직하던 기간은 동일한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인식한 반면, 퇴직 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근로소득자로서 재직 중에 발생한 소득은 항상 기타소득인가? 사례 B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례 B를 보면 처분청은 근로소득자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세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별했다. 그 이유는 저작권으로 받은 인세 등이 계약서에서 명백하게 연속성이 있으므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인세수입 금액의 중요성(해당 기간 소득의 91%)으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례 C에서도 전체소득 중 회의비 등이 20.5%에 해당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판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본업이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수취한 소득금액의 양적크기와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의 중요성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독립성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와 처분청의 각기 다른 해석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으며, 조세쟁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납세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취한 소득인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이지만, 처분청은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소득의 금액이나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소득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 열거주의 방식에 의한 소득분류

사례 B의 납세자는 해당소득이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제1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반면, 원고료 등 수입은 소득세법 기타소득 제20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업소득의 판별 여부는 열거주의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계속적, 반복적 활동 및 영리성 등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당국은 사업성의 판단 등에 대해 관할 처분청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주의에 따른 판단 및 사업성의 판단에 있어서 납세자와 조세당국 간 쟁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IV.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개선방안

본 연구는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대한 법령의 보완

가. 계속적, 반복적 활동의 가이드라인 제공

납세자가 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계속적, 반복적 활동 여부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재화와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계속적, 반복적 활동의 구체적인 요건이 현행 세법에서는 미비하여 납세자와 조세당국 간 주관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계속적, 반복적 활동은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의 원천이 된 인적용역의 반복횟수를 의미한다. 즉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수행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소득금액의 발생횟수이다. 인적용역의 대가로 소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속성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행위를 1회만 수행하고 대가를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이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고 대가를 1회 수취했다면 이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인적용역 소득의 귀속자가 용역을 한번만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구분해서 수취했다면 사실상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득의 귀속자가 용역을 1회만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 활동이란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대가를 2회 이상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로 본다’는 내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내용이 소득세법에 명시된다면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인식차이 및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으로 발생하는 조세쟁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 기준을 납세자에게 전달

현재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구분은 납세자에게 수취한 소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제19조에는 열거되지 않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제20조에는 해당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면 납세자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⁶⁾ 따라서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한 독립적이고 영리성이 있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납세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즉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을 위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행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이 지켜지는 것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두 소득의 실질적 구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세쟁송 등 관련비용의 발생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다. 독립성 및 전체소득금액의 비중에 따른 판별방식 제공

납세자가 부수적 활동이라고 판단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소득의 양적크기와 전체소득의 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소득 중 90%와 20.5%는 중요성 차원에서 사업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한 납세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보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언급되지 않은 인적용역이거나 기존의 인적용역 소득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취한 경우 조세절감에 따른 유인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인적용역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부수적 활동에 대한 명확성을 납세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부수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수취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활동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점은 납세자가 느끼는 부수적 활동과 조세당국이 바라보는 부수적 활동의 개념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부수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수적 활동이란 납세자의 주된 활동에 부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수행한 경우 부수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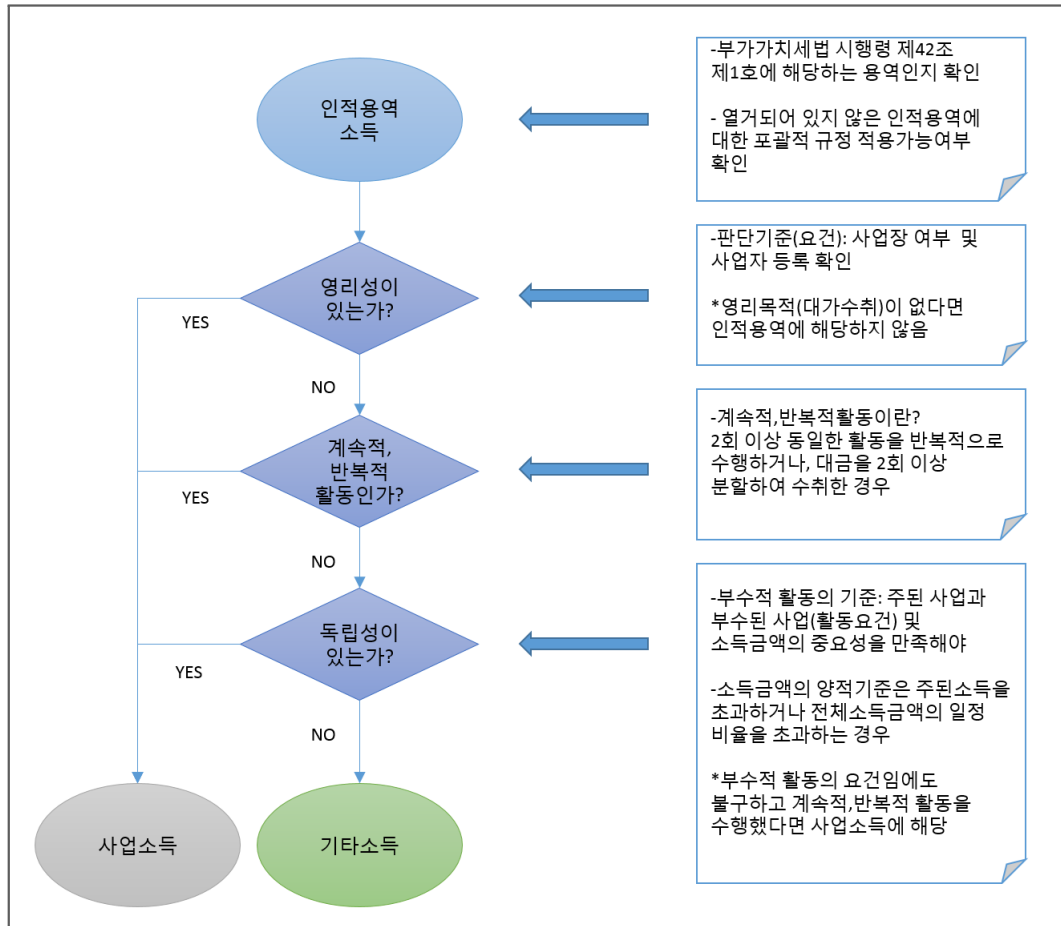
하지만 부수적 활동은 소득구분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납세자가 부수적 활동이라고 인식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 활동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소득 인식요건의 우선순위(pecking order)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수적 활동이라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필요조건으로 한 상황에서 소득금액의 양적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수적 소득금액의 양적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비해 부수적 소득이 더 큰 경우 이는 계속적, 반복적 요건만 갖춘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전체신고소득 중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중요성요건을 설정하여 소득기준의 구분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기준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질의회신을 보면 조세당국은 사업성의 여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그 판단을 위임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가 납세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납세자와 조세당국 모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즉 납세자인 개인은 소득을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는 반면, 관할청의 입장에서는 해당소득의 사업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폭 넓게 해석할 근거를 찾을 유인이 있다.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지침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지침의 예시이다.

〈그림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지침의 예시



2.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유인의 제거

가. 필요경비 인정방식의 문제점

국세기본법 제16조는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필요경비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과 사업소득 중 인적용

역과의 경비율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의 단순경비율은 음악가 등 57.9%부터 음료품배달원 80%까지이며, 사업별로 다양한 비율을 인정하고 있다.⁷⁾ 이에 비해 기타소득 80%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각 사업 뿐 아니라 소득 간 조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주된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사업 및 소득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크게 다르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근접한 수준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유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적용역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최진구와 홍정화 2011 ; 신현걸과 정재연 2014), 인적용역의 필요경비에 과거지출금액에 대한 창업비 상각, 가사경비인정 등 새로운 형태의 필요경비를 인식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박정우와 정래용 2015 ; 유지선과 정지선 2016).

나.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분리과세 조정

현행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즉 기타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해당 규정은 1999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적용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으므로 현 시점에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대상을 조정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유지 또는 확대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을 높임으로써 사업소득과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인적용역 소득은 현재 열거주의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이 수취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보다 높으므로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세당국은 영리성과 독립성 및 계속적, 반복적 활동 여부를 통해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추후 소득세 및 가산세를 처분한다. 납세자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나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한다면 조세의 신뢰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조세쟁송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되지만 납세자는 자신이 수취한 소득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계속적,

7) 2015. 경비율책자. 국세청.

반복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한 독립적이고 영리성이 있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는 주관적 판단을 통해 수취한 소득의 양적 크기가 작은 경우, 전체소득의 비중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납세자와의 조세 쟁송을 완화시키기 위해 양적금액이나 전체신고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기준의 구분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실질적 구분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는 유인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므로 두 소득 간 차이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리과세비율을 조정하여 기타소득으로의 신고유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의 조세쟁송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인적용역 소득의 조세쟁송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둘 간의 세율차이 등 한쪽이 유리한 측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와 세부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소득의 구분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경비 인정 부분을 확대하여 인적용역 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최진구와 홍정화 2011 ; 박정우와 정래용 2015 ; 유지선과 정지선 2016). 추계과세제도의 개정과 필요경비 인정도 인적용역 소득의 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대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과 동일한 잣대로 과세소득을 매긴다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우려도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두 번째 방법,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인적용역에 대한 조세쟁송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소득 구분의 명확성이 확보되면, 인적용역 외의 다른 소득의 구분을 적용하는데 용이하며, 추계과세제도의 개선과 필요경비의 인정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조세당국은 인적용역 소득의 조세쟁송을 완화하고 해당 부분에서 근거과세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5. 기준경비율제도 해설.
- 김완석·정지선. 2015.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 박정우·정래용. 2015.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 109-133.
- 박태승. 2006.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4호 : 109-131.
- _____. 2015. “소득세법상 추계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 67-98.
- 서희열. 2015. 『세법총론』, 세학사.
- 신현걸·정재연. 2014.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293-317.
- 오문성. 2015. “소득세법상 인세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 법제연구 제48호 : 27-50.
- 유지선·정지선. 2016.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 459-484.
- 최병곤·서희열. 2015.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 95-130.
- 최진구·홍정화. 2011.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 79-118.

Cases Study on Business and other Income Taxation System on the Personal Service

Jong—chul Yoon* · Hyuk Shawn**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about personal service through practical cases. The personal services income under positive system is stipulated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Taxpayers are likely to be reported as other income rather than business income because other income has low deduction rate of estimated expense compared to that of business income. If tax authorities impose additional tax by changing into other income from the business income reported by taxpayers, the taxpayer will disagree with the disposal and frequent tax litigation will decrease the reliability of tax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through tax litigation cases related to personal services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First, there is a need to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continuous and repetitive activity in the current Income Tax Act.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independent income through commercial activities, even if the income tax law is not listed as business income, is business incom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o taxpayers income distinction ground such as their quantitative amounts or a percentage of the total reported income not to make a subjective decision. Third, practice cutoff guides of other income and business income are presented to the competent tax authorities in order to avoid arbitrary interpretation. Fourth, It needs to mitigate the difference of expenses recognition ratio between the business income and other income.

〈Key words〉 Personal Service Income, Business Income, Other Income, Estimated Income Tax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jcyoon@kmu.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hshawn@kmu.ac.kr, Corresponding Author